

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8-제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일자 : 2008. 2.

발 의 자: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일치와 국어맞춤법 등에 의한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치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국어맞춤법 등에 의한 자구 등의 정비(안 제3조 내지 제6조, 안 제8조 내지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붙임

나. 기 타

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“제32조의2”를 “제34조”로 “같은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5조의3”을 “「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5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회기중”을 “회기 중”으로, 영 “제15조”를 “제33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, 제4조제1항제3호,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의”로, 제6조제2항 중 “6월이내”를 각각 “6월 이내”로, “30일이내”를 “30일 이내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공무원연금법시행령”을 “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”으로, 제2항 중 “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”을 “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구좌”를 “계좌”로 한다.

제9조 조명 중 “의원상해등”을 “의원상해 등”으로, 제1항 중 “사천시의

회의원상해등”을 “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”으로, 제2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4인”을 “4명”으로, “각호의 1”을 “각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자중”을 “자 중”으로,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“1인”을 각각 “1명”으로, 제1호 중 “의회의원중”을 “의회의원 중”으로, 제2호 중 “국장중”을 “국장 중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34조 --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5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(생 략)</p> <p>1. “직무”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.</p> <p>2. “의정활동비”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5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.</p> <p>3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회기 중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 제33조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 (생 략)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그 밖의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(생 략)</p> <p>1. ~ 2. (생 략)</p> <p>3.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,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.</p>	<p>제3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그 밖의 ----- ----- -----.</p>
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“장애”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“폐질등급”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.</p> <p>② 제4조제1항제3호의 “상해”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<u>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</u> 말한다.</p>	<p>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----- -----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 <u>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</u> --- -----.</p>
<p>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, <u>기타</u>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</p> <p>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<u>6월</u> 이내,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<u>30일</u>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<u>6월</u>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천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을 경유하여 사천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</p>	<p>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.</p> <p>② ----- <u>6월</u> 이내 ----- --- <u>30일</u> 이내 --- ----- <u>6월</u> 이내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8조(보상금의 지급 방법)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, 청구자가 요구한 <u>구좌</u>에 입금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보상금의 지급 방법) ① ----- ----- <u>계좌</u> 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) ① 직</p>	<p>제9조(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) ① --</p>

<p>무로 인한 사망,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에 <u>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</u>(이하 “<u>심의회</u>” 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의회는 위원장 <u>1인</u>과 위원 <u>4인</u>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<u>자중</u>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의회의원</u>중 <u>1인</u> 2. 시본청 관련 담당관·<u>국장</u>중 <u>1인</u> 3. 의무직공무원 <u>1인</u> 4.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<u>자 1인</u> <p>③ (생략)</p>	<p>----- ----- <u>사천시의회의원상해 등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1명</u>----- <u>4명</u>----- ----- <u>각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<u>자 중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의회의원</u> 중 <u>1명</u> 2. ----- <u>국장</u> 중 <u>1명</u> 3. ----- <u>1명</u> 4. ----- <u>1명</u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심의회)의 기능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생략) 4. <u>기타</u> 시장이 요구한 사항 	<p>제10조(심의회)의 기능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그 밖의</u> -----

관 계 법 령 발 취

<지방자치법>

제34조(상해·사망 등의 보상)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(제61조 단서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)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
<지방자치법시행령>

제33조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補填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

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 (상해·사망 등의 보상)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(제 61조 단서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)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